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55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 : 김예지 • 구자근 • 권명호

김선교 · 송석준 · 이명수

이채익 · 지성호 · 최형두
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, 관련 시설을 설치하며, 장애 인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'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'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.6년에 불과하고,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 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(안 제15조의2제2항·제4항 신 설). 법률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공연·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	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
의 지원) ① (생 략)	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
	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
	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
	하기 위하여 「장애예술인 문
	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
	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
	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을 정기
	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2항에 따른 공연·전시 등
	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대
	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	으로 정한다.